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4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신정훈 · 조승래 · 김 현
오세희 · 백승아 · 안호영
최민희 · 양부남 · 안도걸
채현일 · 추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의 수가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시·군”을 각각 “자치구·시·군”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u>政黨 또는 候補者가 設置하되, 選舉事務所 1個所와 市·道 및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選舉連絡所 1個所</u> 2. ~ 5. (생략) 6.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 <u>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自治區·市·郡안에 選舉事務所 1個所. 다만, 自治區가 아</u>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 ----- ----- 1. 大統領선거 <u>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u> 2. ~ 5. (현행과 같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u>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u>

인 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
 는 選舉事務所를 두지 아니
 하는 區마다 選舉連絡所 1個
 所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
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選舉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國會議員地域區마다 選舉連
絡所 1個所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군·시·군(하나의 군·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
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
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
소를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
의 수가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를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치) ① -----

자

치구 · 시 · 군-----자치구 ·
시 · 군-----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